

제289회 미추홀구의회 (임시회)
2025.7.15.(화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【박수연 의원 대표 발의】

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오세진]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1. 검토경위

- 발 의 자: 박수연 의원 외 4명
 - ※ (공동발의자) 김영근, 이수현, 김재원, 김오현 의원
- 발의일자: 2025. 6. 20.
- 심사일자: 2025. 7. 15.

2. 제안이유

-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권고된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,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(안 제3조)
- 다. 심사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)
- 라.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심사(안 제5조~제8조)
- 마. 심사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(안 제9조~제10조)
- 바.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(안 제11조)
- 사.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(안 제12조)
- 아. 예산편성·집행, 사후관리, 징계현황의 공개 등(안 제13조~제15조)

4. 관련근거

- 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
-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(2024. 12. 16.)

5. 검토의견

○ 개정 필요성 검토

-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¹⁾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지방의회에 권고('25.1.13.)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조문 검토

- **안 제4조**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미추홀구의회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함)를 설치·운영하고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기존에는 소속 의원과 2/3 이상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으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개정안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,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통해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함.

- **안 제5조**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심사 전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사전 공개토록 하였으며,

- **안 제6조**는 사전 공개된 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였음.

1) 국민권익위원회,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(2024. 12. 16.)

- **안 제7조**는 출장 의원이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, 심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음.
- **안 제12조**는 출장 의원이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심사위원회는 출장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토록 함. 아울러, 심의 결과가 반영된 출장보고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되며,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**안 제13조**는 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, 출장경비는 관련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산출하며, 심사위원회 의결로 승인된 항목에 한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, 또한, 출장자는 승인된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출장과 무관한 부당한 비용 지출이나 수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- **안 제15조**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결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함. 이는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 등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음.

○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.
-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절차적 민주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는 장치이며, 출장 종료 후 심사위원회의 적법·적정성 심사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한 점은 출장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.
- 또한, 출장경비 산출·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징계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주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. 참고. 주요 개정사항

<주요내용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출장 내실화	-	1일 1기관 방문(회의참석) 및 수행인원 최소화 권고
심사위 구성·심사개선	2/3 이상 민간위원 구성 및 외부 추천	(위원비율) 민간위원+지방의원(2명 이하) (구성방식) 공모·외부추천방식 병행
	-	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
출장 사전검토 강화	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 3일 이내 누리집 게시	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,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누리집(심사위 의결서 첨부) 공개
	-	심사 시 방문기관, 직원명단, 비용 등 정보 통합 심사
	-	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
사후관리 강화	출장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허가권자에게 제출 및 60일 이내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	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(심의결과 기재)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☞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 회부
정보공개 확대	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누리집 게시	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누리집, 내고장알리미 등 의무 게시 및 심사결과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록
	-	징계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(내고장알리미) 게시
비용지출 제한	-	항공 및 숙박대행, 차량임차,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 금지
	-	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금지